

대통령 이명박님께 올리는

<판사 범죄신고 탄원서 2>

눈 앞의 손 바닥을 보면서도 손 등이라고 판결하는 사법
온통 더러운 것을 보고도 깨끗하다고 판결하는 사법
부정과 부패가 온 나라에 악취를 풍기는데도
헌법이 보장해주는 권한이라며 원님 행세하는 사법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1등을 달리는 사법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과 부패는 사법부패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

오직 사법변혁과 개헌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인 것입니다.

탄원인 곽춘규 올림

판사범죄신고 탄원서2

탄원인 : 곽 춘 규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의 아들)

 곽 홍 근 (사고 피해 당사자)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2-1 102호 (TEL: 010-3737-7004)

공정한 나라 올바른 사회를 이루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대통령 이명박님께 가슴이 무너지는 통곡의 탄원을 올리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망국적 사법부패를 범죄로서 신고 드리며

3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만행에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답변들을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회와 사법부에서 자체적인 어떤 은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범행을 조직 내부문제로 다루면서 조직적으로 자체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중에 저와 같이 범죄 신고와 탄원이 올려 진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차원에서 처리되는 민원방식으로 다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 민원 절차에 해당하는 담당자들(검사와 민원담당자)이 매수되었거나 청탁에 의하여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사 검사가 벌이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카르텔적인 범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판사 검사의 직무중 범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정권의 책임으로 당연히 전가될 것입

니다. 사법부의 문제이니 사법부가 책임지게 되기보다는 (물론 언젠가는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은 현 정부에서 일차적인 책임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선거에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계층의 범죄를 비호해주고 묻어두게 되면 나중에는 굵은 상처와 같이 망국적인 사건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들 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만한 직위에서조차(판사 검사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권한) 그렇게 큰 사고를 키운 것과 같이 이 사건은 국회도 아니고 부패 사법부도 아니었지만, 나라와 국민의 가슴에, 또 정부의 국정기조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할 수 있는 (건국 63년간 한 번도 바뀐적이 없음으로 현재는 정부까지도 우습게 볼 뿐 아니라 더하여 정권까지 마음껏 바꿀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법부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것은 조족지혈이며,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장도들과 같이 합법을 가장하여 전 재산을 강탈하여갔습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재산을 빼앗는 데는 도대체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님께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사건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뇌물을 주지 않았기에 이렇게 손바닥 앞 뒤 보다는 더 분명한 사건을 조작하고 오히려 약점을 빌미로 전 재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망국적 사건을 탄원으로 올리는 저를 용서하시기 바라며 속히 부모님께서 집과 재산을 찾고 생명을 보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저도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또한 이들이 저희 한 가정에만 이렇게 했다면 일면 수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조직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없이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조사해 보셔도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법부가 행한 범죄라고 별도로 사법부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부조리, 또는 무책임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신고한 탄원에 대하여는

청와대 신문고에 판사범죄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법원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 드렸는데 춘천지방법원으로 보내셔서 늘 하는 이야기인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만이니 피해자 가해자를 바꾸든 죄인을 만들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신고내용은 목격자와 상대방이 모해위증을 하고 위증하고, 증거인멸하고 계속 사기소송을 걸어와도 담당 검사께서 전혀 범죄를 막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다가, 분명한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오히려 고소장을 진정서로 바꾸고, 무혐의로 사건 처리하려다가 이에 다시 청와대에 탄원을 올리고 나서야 고소장으로 바꾸고, 이러한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여 또 다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시킨 것입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뭐 하러 고소장을 진정서로 둔갑시키고 갖고 있다가 끝낼려고 했겠습니까, 더욱이 이 주민철 검사는 2009년 9월에 청와대로 접수한 본 사건의 민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2010년 7월) 더욱 확실한 증거로 다시 전00을 고소하자 이

렇게 고소장을 진정서로 조작하고 , 결국에는 유학이라고 갔지만 사실을 도망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자신의 범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1. 4. 22 청와대신문고에 본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법부와 춘천지검과 영월지검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피부서를 정하고 신청하였는데 결국은 춘천지법으로 가게 되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늘 같은 내용입니다. 재판 중에 행하여지는 소송지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라는데, 검사께서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무혐의 처분하다가 결국에는 옷을 벗는가 하면, 유학을 가버리니 어떻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청와대 신문고는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으로 표시하였는데, 오늘 보니 매우 만족으로 되어 있어 참 놀랍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놀랐겠지요.

이러한 사유로 새롭게 다시 탄원을 올립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요구 사항이 전혀 다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불효를 씻을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강제경매 되고 남은 경매잔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일차적으로 신고했더니 그 남아있는 경매잔액에
온갖 가압류를 붙여놓고, 가압류가 붙어서 못찾아가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아직
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가압류 때문에 경매
잔금을 못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
매 배당 때 찾아서 숨겨 두었겠지요.

[사건의 전반적 내용]

지난 2011년 4월 6일 강원도 봉평에서 76세 된 아버지와 71세된 어
머니만 계시는 집에 아무 연락도 (계고장 절차) 없이 집달관은
무장한 경찰관 10명, 경매계와 집행관직원 7명 정도 용역 10여명정도
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잡아 놓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
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4륜 오토바이까지 마음대로 압류하여 증거
를 훼손하였습니다.

(본 교통사고의 해당 오토바이지만 , 사건이 진행되었던 4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이나 검증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집행 하는 날 이들은 부모님의 당장 먹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모두 보관소로 압류하여 갔습니다.

이날 부모님들은 망연자실하여 정신을 잃고 계셨고 , 서울에 살던
저는 2시간을 급히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모두 끝내 놓고 무장한 경관
들과 경매계 직원들과 용역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법적 판사들의 범죄적 무력에 저는 그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매했는데 왜 강탈당했다고 주장 하느냐하면

1. 본 민사사건 1심 재판장인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와 2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지대운 부장판사가 짜고서 불법적인 소송지휘를 하여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한쪽 편만 들어주고 재판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민원 1BA-0908-116571)

그리고 재판 중 중간 중간 경매계에 청탁 지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양심을 품고 지휘한 것입니다.

민사 1심 재판장 영월지원 이중민판사는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고 불법한 소송지휘로 상대방의 1억5천의 청구중 1억 2천 만원 정도를 판결하였고

저희 변호사의 반소신청에 대하여 취소하라고 법정에서 목소리 높여 종용하였고, 합의부로 넘겨야 할 재판을 끝까지 단독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반소 사건은 합의부에서 판결해야 하고 , 소가 1억 넘는 재판도 합의부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단독 판결하였습니다.

저희가 각계 각층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고 강제경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이 모든 악행에 더하여 이중민 판사 자신이 직접 또 다시 그 이전에 신청해 놓은 이의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여 불법적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영월지원에는 이중민 판사 한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모두 혼자서 처리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판결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모두 자신이 또 다시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본건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이 2011년 4월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이 접수되어있고, 특히 춘천항소부에도 항소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관 사무소의 담당 모계장은 2달정도 여유시간을 줄 것처럼 통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월 6일 노인들만 사는 집에 군사작전 하듯이 무장경관10명과 집행부 7명 용역10명 정도로 연락도 없이 강탈하였고, 두 노인네가 당장 먹을 것과 옷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압류하여갔습니다.

2. 이렇게 억울하다면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1). 최초 목격자 전00은 상대방 가해자와 친한 사업관계입니다.

(씨감자를 공급하는 전00과 공급받아 감자를 재배하는 사이)

이 최초의 목격자인 전00은 교통사고 현장을 경찰이 오기 전 이유 없이 두 대의 오토바이를 모두 포개서 길 한쪽에 치워놓음 (---> 신고후 경찰의 현장도착 시간이 10분정도에 불과 함에도) 그 후 4년의 재판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최초 목격자 전00을 고소하였지만(모두 법정 선서한 증언기록) 명백한 법정 증언 기록을 보고도 검사는 모해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직접 개입하여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손바닥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저희의 사륜 오토바이는 왜 증거는 고사하고 감정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목격자 전00의 고소장에는 손바닥 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이수재 검사와 이후 항고 처분한 주민철 검사는 목격자 전00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여 주고 범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재판에 대하여 중범(모해위증, 위증, 증거인멸)인 범죄인 전00을 놓아주었을 뿐 아니라 결국에 아버지의 전 재산을 그냥 눈뜨고도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처분내용을 밝혀드립니다.

2008. 9. 9 이수재검사 전00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
너무도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무혐의
---> 대통령님이하 33인께 탄원
(대통령실 민원 1BA-0908-116571)올린 후
---> 2009년 사직하고 변호사 전업

주민철검사의 처분내용

2008. 10. 20 항고사건 처분 사건번호 : 2008 불항 제 59호

2009. 9. 9 대통령실 민원 1BA-0908-116571 조사 담당 검사

2009. 12. 8 대통령실 민원과 대검찰청 민원을 2009진정80호
2009진정87호로 하여 무혐의 진정 종결

2010. 7. 23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하여 전00을 다시 고소

2010. 7. 28 주민철검사는 전00에 대한 고소장을
<2010 진정 91호>로 변경하여 접수받음

2010. 청와대에 탄원제출 고소장을 진정서로 변경함을 탄원

2010. 9. 14 고소장을 진정서로 바꾸어 종결하려다가 청와대 탄원을 올리자 하지도 않은 진정 <2010 진정 91>을 고소장으로 바꾸고 2010 형제 4360호로 접수하여 진정이 종결되고 고소장이 새로 접수된 것 처럼 진정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 하였습니다.

2010. 그 후 미국으로 유학갔습니다.

조금 자세히 언급하자면, 영월지검의 주민철 검사는 2010. 7. 28 너무도 분명한 고소장과 증거들 앞에서 죄의식이 발동해서인지 아니면 그 이전년도인 2009년 12. 8 2009 진정 80호 및 87호를 진정종결함에 따른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아예 고소장을 진정서로 둔갑시켜놓고 수사를 하지 않고 또 기각시키려고 해서 청와대에 신고하자

다시 고소장으로 바꾸어 놓고는 동료 검사에게 기각시키게 하고 자신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사실은 도망간 것입니다.

[주민철 검사는 청와대와 대검찰청에서 2009. 9. 9 이 사건 민원 (대통령실 민원 1BA-0908-116571)을 수사하라고 이첩하자 “ 대법관이 결정한 것은 설사 나중에 증거가 나타나도 조사할 수 없다 ” 면서 조사도 안하고 진정 종결한 검사입니다. 2009. 12. 8 일자]

2). 2010년 7월 가해자인 상대방 김xx에 대한 고소장에 대하여 경찰은 4년 지난 사건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에 아직도 당시의 조사 경관인 김진오 경장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김xx에 대하여 위증으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건 관계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웬만한 증거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에 대하여 영월지검 이상혁 검사는 증거불충분결정을 내립니다.

2011.2월 당시의 검찰조사에서는 조사계장이 위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봉평에서 영월까지 2시간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이 조사관은 밤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조사 시간 내내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담당검사인 이상혁 검사께

첫째 녹음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받게 해줄 것과
둘째 현조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혁 검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서는 연락도 없이 인천으로 전임가기 2일전에 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켰습니다.

2011.4월 현재 이 사건이 춘천 항소부의 손태근 부장검사께 배당되었는데 이 손태근 부장검사는 바로 이전 사건인 최초 목격자 전00의 항소장에 대하여 기각시킨 검사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되어있습니다.

손바닥 앞 뒤 보다는 더 분명한 증거들 앞에서도 기각결정을 한 손태근 부장검사께서 이번의 상대방 김xx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 경찰이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영월지검에서 올라가는 항소를 오직 한 검사만 통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의 취지를 감할 수 있고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증거와 사실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불법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대법관들과 형사재판 항소심에 관여했던 당시의 춘천지방법원의 박순관 부장판사를 배후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본 교통사고 사건 항소심 형사재판 당시에 이 교통사고 사건의 최초 목격자 전00을 증인으로 불러주지 않는 이상한 재판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교통사고의 최초 목격자를 증인신청해주지 않는 판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리 애걸 복걸 해도 본 교통사고의 핵심인물인 최초 목격자 전00을 불러주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냥 종결하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기피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난 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 되자 그때서야 증인으로 불러준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불러 증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로, 증언으로 남아있기에 이렇게 지금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형사재판에서 박순관 재판장은 기피를 당하면서도 불러주지 않은 최초 목격자 전00을 그 후에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중민 재판장이 불러서 마음껏 위증하게 해주고 불법적 소송지휘와 반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고 합의부로 갈 사건을 끝까지 단독처리 한 것입니다.

즉 박순관판사가 후배판사인 이중민에게 사주하여 자신의 불법적 재판 진행에 대하여 이의신청했다는 양심을 풀려고 한 가정의 재산을 모두 강탈되게 한 것으로 재판기록과 증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씌워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사고의 최초 목격자도 불러주지 않는 판사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 하겠습니까
사고 오토바이를 가해자인 상대방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없애 버리고
사륜 오토바이만 남아있는데
이 사륜 오토바이를 감정이나 검증조차 해주지 않는 판사의 속셈에
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너무도 명백한 사실들 앞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채택해 줄 수 없다
며 증거신청, 감정신청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날 강도와 같이 불법적 판결로 인한 무력으로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 말고 그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답과 집을 모두 강탈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망국적인 재판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위에

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님들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너무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재판 서류로 증거가 남아 있
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아니 전화 한통화면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서를 법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사정 팀에 조사를 시켜보시면 사건의 실상은
훨씬 더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법부의 부패를 보시게 될 것이며
판사, 검사가 작당을 하여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강탈하는지
현장을 목격하듯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사법부의 일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직무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즉, 기소의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3권 분립의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기소여부는 오직 정부의 의지에 있는 것이고

판사 검사라고 할지라도 직무에 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사회와 나라를 건실히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이런 사건 하나를 제대로 푸는 것은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증거를 인멸하고 모해위증으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목격자 전00이 처벌되고 무엇보다도 빼앗긴 재산과 땅을 찾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요청

1. 목격자 전00의 범죄, 모해위증과 위증, 증거인멸, 증거조작의 명확한 증거는 꼭 검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범죄자임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들로 고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전00에 대한 고소장

2. 주민청 검사의 놀랍고도 고의적인 무혐의 처분과 동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고의적 사건은폐에 대한 고소장 조작사건입니다. 청탁이나 뇌물 등의 이유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처분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행하였습니다.

3. 조사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00의 고소장을 읽어보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검사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지금까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문서조작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사둔 맥의 빈방에서 묵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보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래의 첨부서류는 전문적인 분이 아닌 일반인들께서도 읽으시면 명백하고 분명하게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 1. 전00에 대한 고소장
2. 탄원서 1

2011 . 5. 29

탄원인 곽춘규 올림